

6. 宅地開發 및 供給에관한指針 改善

資料提供：建設部 1994. 8. 1

1. 택지 58540-881('93.11.10)의 관련임.
2.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과 동시에 수립토록 되어 있는 상세계획 수립시점을 준공전까지로 변경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 세대수 축소조정을 개발계획변경없이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판단에 의거 가능하도록 택지개발공급에관한지침을 불입과 같이 개선함.

택지개발 및 공급지침 개선(안)

택지개발 및 공급지침중 다음과 같이 한다.

“Ⅲ.2.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Ⅲ.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2.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시

○ 첫번째 문단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가 조정할 수 있되 당초 계획된 용적을 및 택지공급가격은 변동할 수 없음

— 공급된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당초계획된 평형보다 작은 평형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계획된 용적을 및 호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 확정측량단계에서 공급받은 택지가 축소된 경우 또는 건물의 배치·설계·시공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소한의 세대수 축소조정 허용
-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수를 축소한 경우 동일 사업지구내 공동주택건설용지의 다른 가구(블럭)에서 당초계획된 용적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축소된 호수만큼의 추가확보를 허용

“Ⅲ.3.다.”를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Ⅲ.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3. 상세계획구역의 지정 및 상세계획의 수립

다. 상세계획에 대한 조치

- 첫째문단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동계획을 변경조치”를 준공인가전까지 최종 실시계획변경시 상세계획을 결정. 다만, 계획적 도시개발의 필요가 있는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승인권자가 실시계획수립시 상세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음”으로 한다.
- 둘째문단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이용을 관리하되, 여건변화로 부득이 택지개발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가 사안에 따라 상세계획, 고도지구, 미관지구등 변경사유에 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조치.

부 칙

- ① 이 지침은 1994. 8. 1부터 시행한다.